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95
----------	-------

발의연월일 : 2025. 7. 4.

발 의 자 : 김성원 · 김선교 · 고동진
이종배 · 이인선 · 박충권
김위상 · 조승환 · 송석준
김정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전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력한 국방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국가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군사활동과 시설 운영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진동, 환경오염, 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포탄 오발, 오폭, 화학물질 유출 등은 예상치 못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면서 생명과 재산, 정신적인 안녕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와 함께 적(敵)의 도발행위나 위해(危害)행위로 인한 민간 피해 역시 우리 국민이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인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구제 및 지원제도는 미흡한 실정

임.

국가는 안보 유지와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전 예방과 대비,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공정한 피해 보상과 복구 지원, 그리고 피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뿐만 아니라 적 도발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사시설, 군사훈련지역 및 적대세력의 무력도발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지원하며, 피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안정적 회복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의 위험 평가 결과를 포함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보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함(안 제6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대표, 전문가, 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운영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긴급구조와 구호 활동을 개시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국가는 피해자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상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6조).

바. 국가는 적대세력의 무력 도발, 테러, 사이버 공격, 침투 등 적대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특별지원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9조).

사.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업 유치, 산업시설 설치, 일자리 창출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안 제20조).

아. 국가는 피해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주거지 및 생활 기반 시설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21조).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시설, 군사훈련지역 및 적대세력의 무력도발 등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지원하며, 피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안정적 회복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사훈련”이란 육·해·공군, 해병대 및 그 밖의 군 관련 조직이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말하며, 전술적 훈련, 대규모 합동훈련, 사격 훈련, 기동훈련, 공중·해상·지상에서의 모의 전투, 화생방 대응 훈련 및 화력 시험 등 일체의 군사 활동을 포함한다.
3. “군사훈련영향지역”이란 군사훈련이 계획되거나 시행됨으로써 그

영향이 미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말하며, 직접적인 훈련 장소뿐만 아니라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탄도, 폭발, 낙하, 소음, 진동, 환경오염 등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 지역의 범위와 기준은 주민 안전과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적대행위”란 적대 세력에 의한 무력 공격, 국지도발, 잠입·침투, 폭탄 투척, 테러, 사이버 공격 등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목적의 일체의 직접·간접적 도발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 적대행위 등과 관련된 사고 또는 위해 행위로 인한 신체적 상해, 사망, 정신적 충격, 경제적 손실, 재산적 피해 등을 입은 사람을 말하며, 해당 사고 당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더라도 장기간의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경우를 포함한다.
6. “피해 배상”이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항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는 조치를 말한다.
7. “피해지역”이란 군사훈련 중 민간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사고 규모에 따라 일정 거리 내에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8. “유족”이란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책임지며, 군사시설·군사훈련 및 적대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복구할 의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보호와 지역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와 협력하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 적대행위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적용한다.

② 전시, 준전시, 국가비상사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 적대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다.

제2장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

제6조(종합안전대책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의 위험 평가 결과를 포함한 종합안전대책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보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제7조(위험평가 및 고지) ①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고지는 최소 30일 전에 문자, 방송, 안내문,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실시한다.

제8조(방호시설 및 대피시설 설치) ① 국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방호시설과 주민 대피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① 국방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대표, 전문가, 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력체계는 예방·대응·복구·조사·보상 등 주요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③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피해 발생 및 긴급대응

제10조(긴급구조 및 구호) ① 사고 발생 시 국방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긴급구조·구호활동을 개시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② 긴급구조는 군(軍), 경찰, 소방, 응급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행한다.

제11조(군 긴급대응팀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사훈련 중 사고 또는 적대행위 발생 시 위해물질 제거, 화생방 대응 등을 담당할 긴급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

② 긴급대응팀의 편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현장 피해조사 및 평가) ① 국방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즉시 공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피해 조사 결과는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주민에게는 공표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한다.

제13조(응급주거 및 생활지원) ① 피해자에게 임시거주지 및 응급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 긴급생활지원을 신속히 실시한다.

②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피해구제 및 지원

제14조(피해자의 권리 보장) ① 피해자와 유족은 보상 및 지원 절차에서 정보 제공, 의견 개진, 조사 참여,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피해자 중심의 보상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5조(긴급생계지원금) ① 국가는 사고 발생 후 7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피해보상 및 배상)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상을 실시한다.

② 보상 범위는 신체·정신·재산 피해 전반을 포함하며, 피해 규모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17조(정신적 피해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정신건강 치료,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② 지원시기에 대한 기준은 피해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한다.

제18조(주거 및 생활환경 복구)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 개보수, 신축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종합적인 주거대책을 마련·시행한다.

제19조(적 도발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국가는 적대세력의 무력 도

발, 테러, 사이버 공격, 침투 등 적대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② 특별지원에는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재건비, 심리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일상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포함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특별지원 대상을 신속히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 특별법 또는 관련 지침에 따른 추가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피해지역 재건 및 발전

제20조(지역경제 회복 및 산업지원)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업 유치, 산업시설 설치, 일자리 창출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주민 이주 지원 및 정착) 국가는 피해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주거지 및 생활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

제22조(민군상생발전계획 수립) ① 국방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민군상생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기반시설 확충, 주민 복지사업, 공동체

회복 등을 포함한다.

제23조(미활용 군용지 활용) 국방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를 민군상생발전 및 지역재건을 위하여 수의매각, 교환, 임대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비밀유지 의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재원 확보) 국가등은 군사훈련 중 영향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 복구·지원 및 민군상생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영리 목적 단체 활동 제한)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 목적의 단체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시행 전 3년 이내에 실시한 군사훈련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군사훈련영향지역의 피해 보상 및 지원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